

#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89호 2017. 11. 24. (금요일)

|  |  |
|--|--|
|  |  |
|  |  |

## 예 규

- 하동군 예규 제19 호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 2

##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7-18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6
- 하동군 고시 제2017-18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 9
- 하동군 고시 제2017-18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2
- 하동군 고시 제2017-187호    2017년도 하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고시..... 14

## 입법예고

- 하동군 고시 제2017-1167호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
- 하동군 고시 제2017-1169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0
- 하동군 고시 제2017-1207호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7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17년 11월 24일

##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예규 제19호

### 하동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각종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2-2, 1-2-3, 3-2-6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재해, 안전 등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자연취락지구”란 법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취락지구 외에 5호 이상 인가(주민등록상)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는 각 주택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5. “경관중점관리구역”이란 하동군 경관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7.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4조(성토 및 절토)** ① 성토 및 절토 구간에는 현장 여건상 옹벽(석축)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탈면은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부지 조성 시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기타 인접부지에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배수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중으로 심어야 한다.

② 개발행위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 부분은 차폐수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토사반입 및 반출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로 토사를 반출입 할 경우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1.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2.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또는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집단화 되지 않은 농지로서 우량농지로 보존할 가치가 없을 것
- 4. 경관중점관리구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5.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연변가시지역의 산지와 만조시 해안으로부터 500m 이내의 산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 2.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 3.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1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 경계에 1.5미터 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접수 또는 허가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발전시설 허가 기준 유효기간) 제7조 발전시설 허가기준 규정은 이 지침을 발령한 날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하동군 고시 제2017 - 18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15.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35 외 2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23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 명주소고시일 | 도로 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15-4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35     | 2017 1115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921-2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538    | 2017 1115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13-4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64-7  | 2017 1115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018-2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섬진강대로 3664-30 | 2017 1115 | 2009 0710 | 섬진강 지역명 사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박달리 610-1  | 경상남도 하동군 양보면 상고개로 253-22   | 2017 1115 | 2007 0618 | 양보면박달리에서진교면월 윤리경계에있는 재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관곡리 836-1  |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상고개로 570-26   | 2017 1115 | 2007 0618 | 양보면박달리에서진교면월 윤리경계에있는 재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축지리 1023-9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동로 107      | 2017 1115 | 2007 0618 | 도로시점이 악양중심으로 부터 동쪽에 위치하여 방향성에 따라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385-8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악양서로 325-18   | 2017 1115 | 2007 0618 | 도로시점이악양중심으로 부터서쪽에위치하는 방향성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59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194       | 2017 1115 | 2009 0302 |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627-1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4        | 2017 1115 | 2007 0618 |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탐리 627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화개로 56        | 2017 1115 | 2007 0618 | 화개면을 통과하는 주요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356-7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859       | 2017 1115 | 2009 0702 |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    |
| 건물 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764-1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회신길 108      | 2017 1115 | 2008 0402 | 양지마을 옆 회신교에서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하동군                   | 2017      | 2007      | 동점이라는 자연마을이름                                 |    |

|                |                              |                                   |              |              |                                                              |  |
|----------------|------------------------------|-----------------------------------|--------------|--------------|--------------------------------------------------------------|--|
| 번호<br>부여       | 적량면 서리<br>686-4              | 적량면 동점길<br>28-3                   | 1115         | 0618         |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하동읍 흥룡리<br>200   | 경상남도 하동군<br>하동읍 매화골떡<br>점길 156-18 | 2017<br>1115 | 2007<br>0618 | 매실이 많이 나는 마을특<br>성에 떡점이라는 자연마을<br>이름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법대리<br>산26-2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퇴골길<br>26-34      | 2017<br>1115 | 2008<br>0402 | 법대리의 서쪽 산기슭에 있<br>어 산자와 곡자를 딴 이름<br>을 붙여 퇴골이라는 자연마<br>을이름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미점리<br>산20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미서길<br>57         | 2017<br>1115 | 2007<br>0618 | 미점서쪽에 있다하여 붙여<br>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황천면 애치리<br>39-1  | 경상남도 하동군<br>황천면 숙재2길<br>56        | 2017<br>1115 | 2009<br>0302 |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br>두번째 도로명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정금리<br>61-1  | 경상남도 하동군<br>화개면 신촌도심<br>길 385     | 2017<br>1115 | 2009<br>0302 | 골짜기의 옛지명에서 유래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청룡리<br>257-1 | 경상남도 하동군<br>옥종면 은행나무<br>길 32      | 2017<br>1115 | 2008<br>0402 | 큰은행나무로 가는길로 은<br>행나무길로 명명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정서리<br>842-2 | 경상남도 하동군<br>악양면 정동상신<br>길 89-32   | 2017<br>1115 | 2007<br>0618 | 정동과 상신의 자연마을명<br>을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적량면 동산리<br>580   | 경상남도 하동군<br>적량면 황금길 3             | 2017<br>1115 | 2007<br>0618 | 주민들의 건의로 황금길로<br>명명                                          |  |
| 건물<br>번호<br>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br>황천면 황천리<br>647-3 | 경상남도 하동군<br>황천면 황보길<br>12-70      | 2017<br>1115 | 2008<br>0402 | 황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br>영                                           |  |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하동군 고시 제2017 - 185호

##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하 동 군 수

직인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km) |
|------|------|--------|-------|-----------|--------|-------------|-------------|----------|-----------|
| 결정   | 군도   | 7호     | 하동~홍룡 | 적량면<br>관리 | 2,635㎡ | 관리<br>42-16 | 관리<br>110-4 | -        | L=0.18    |
|      |      |        |       |           |        |             |             |          |           |
|      |      |        |       |           |        |             |             |          |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적량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017년 5월 2일~ 2018년 5월 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기간 : 2017년 11월 20일 ~12월 4일

-장소 : 하동군청 건설교통과(별관 2층)

|      |                    |
|------|--------------------|
| 첨부서류 |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
|------|--------------------|

| 일련<br>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br>목 | 공부상<br>면적<br>(㎡) | 편입면<br>적<br>(㎡) | 소 유 자            |                    | 비<br>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1        | 적량면<br>관리 | 42-16      | 대      | 78               | 78              | 하동농<br>업협동<br>조합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        |
| 2        | 적량면<br>관리 | 42-2       | 도      | 205              | 205             | 하동군              |                    |        |
| 3        | 적량면<br>관리 | 42-3       | 도      | 364              | 51              | 여종업<br>외 2인      |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        |
| 4        | 적량면<br>관리 | 42-7       | 답      | 40               | 40              | 하동군              |                    |        |
| 5        | 적량면<br>관리 | 42-8       | 도      | 74               | 3               | 하동농<br>업협동<br>조합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        |
| 6        | 적량면<br>관리 | 65-2       | 도      | 36               | 36              | 정재구              | 하동군 적량면 관리 90      |        |
| 7        | 적량면<br>관리 | 66-3       | 도      | 46               | 46              | 하동군              |                    |        |
| 8        | 적량면<br>관리 | 67-1       | 대      | 40               | 40              | 하동군              |                    |        |
| 9        | 적량면<br>관리 | 67-2       | 도      | 255              | 255             | 국                | 국토교통부              |        |
| 10       | 적량면<br>관리 | 67-3       | 대      | 110              | 110             | 국                | 재정경제부              |        |
| 11       | 적량면<br>관리 | 67-6       | 대      | 22               | 22              | 국                | 재정경제부              |        |
| 11       | 적량면<br>관리 | 67-4       | 대      | 56               | 56              | 하동군              |                    |        |
| 12       | 적량면<br>관리 | 67-5       | 대      | 36               | 36              | 이차옥              | 하동군 적량면 관리 102-6   |        |
| 13       | 적량면<br>관리 | 102-1      | 도      | 284              | 284             | 김용대              | 울산시 서부동 453-1      |        |
| 14       | 적량면<br>관리 | 102-1<br>4 | 대      | 183              | 183             | 하동농<br>업협동<br>조합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        |
| 15       | 적량면<br>관리 | 102-1<br>5 | 대      | 53               | 53              | 하동군              |                    |        |
| 16       | 적량면<br>관리 | 102-8      | 대      | 192              | 57              | 김인환              | 하동군 적량면 관리 102-8   |        |
| 17       | 적량면<br>관리 | 102-1<br>2 | 도      | 54               | 54              | 하동군              |                    |        |
| 18       | 적량면<br>관리 | 102-1<br>3 | 도      | 18               | 18              | 하동군              |                    |        |

|    |           |            |   |       |     |                  |                    |
|----|-----------|------------|---|-------|-----|------------------|--------------------|
| 19 | 적량면<br>관리 | 103-2      | 도 | 30    | 30  | 국                | 국토교통부              |
| 20 | 적량면<br>관리 | 105-2      | 대 | 549   | 1   | 하동농<br>업협동<br>조합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
| 21 | 적량면<br>관리 | 105-3      | 도 | 152   | 152 | 김영두              | 하동군 적량면 관리         |
| 22 | 적량면<br>관리 | 110-2      | 도 | 182   | 182 | 남성준              | 마산시 신월동 19         |
| 23 | 적량면<br>관리 | 110-4      | 도 | 125   | 125 | 하동군              |                    |
| 24 | 적량면<br>관리 | 110-5      | 전 | 93    | 1   | 하동농<br>업협동<br>조합 |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265-11 |
| 25 | 적량면<br>관리 | 110-7      | 도 | 25    | 25  | 하동군              |                    |
| 26 | 적량면<br>관리 | 110-8      | 도 | 7     | 7   | 하동군              |                    |
| 27 | 적량면<br>관리 | 110-9      | 도 | 76    | 76  | 하동군              |                    |
| 28 | 적량면<br>관리 | 122-5      | 도 | 327   | 4   | 국                | 국토교통부              |
| 29 | 적량면<br>관리 | 122-1<br>3 | 답 | 40    | 40  | 이의석              | 하동군 적량면 관리 45      |
| 30 | 적량면<br>관리 | 129-4      | 도 | 181   | 1   | 국                | 농수산부               |
| 31 | 적량면<br>관리 | 946        | 도 | 527   | 17  | 국                | 국토교통부              |
| 32 | 적량면<br>관리 | 948        | 도 | 1,116 | 263 | 국                | 국토교통부              |
| 34 | 적량면<br>관리 | 948-5      | 도 | 6     | 6   | 국                | 국토교통부              |
| 35 | 적량면<br>관리 | 948-6      | 대 | 16    | 16  | 국                | 기획재정부              |
| 36 | 적량면<br>관리 | 955        | 구 | 630   | 62  | 국                | 국토교통부              |

하동군 고시 제2017 - 186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1. 20.

##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60 외 6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비고 |
|-------------|-------|---------|----------|----|
| 별 지 참 조(7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7. 11.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 명주소고시일 | 도로 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75-15             |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560   | 20171120  | 20090702 | 세종태실지 명칭 사용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남산리 130               |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삼화실로 46     | 20171120  | 20140701 | 옛 지명으로 도로명 부여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미점리 산92-6, 501-1, 502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개치미동길 32-56 | 20171120  | 20070618 | 개치와 미동의 마을명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입석리 674-1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봉대길 90-7    | 20171120  | 20070618 | 옛 중국의 금릉 봉황대의 황자를 빼고 봉대로 명명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138-5             |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부계2길 88     | 20171120  | 20070618 | 오리가 많이 살았던 골짜기에서 유래된 자연마을명에 일련번호 방식의 두번째 도로명 반영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480-4             |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황금길 122-18  | 20171120  | 20070618 | 주민들의 건의로 황금길로 명명                                |    |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1635-6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예인촌길 28     | 20171120  | 20090302 | 예술인의 집단 주거지인 예인촌을 도로명에 반영                       |    |

하동군 고시 제2017 - 187호

# 2017년도 하동군 수렵장 설정 변경 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2017년 하동군 수렵장 설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 하 동 군 수

- 1. 변경사항 : 2017.11.23.일을 기점으로 하동군 수렵장 운영 일시 중지
- 2. 수렵장 운영 기간

| 항 목  | 운영 기간                                                            | 비고 |
|------|------------------------------------------------------------------|----|
| 당 초  | 2017.11.1.~2018.1.31.                                            |    |
| 변 경  | 2017.11.23.부터 AI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일시 중지                                |    |
| 변경사유 | AI 위기경보(심각단계)에 따라 AI확산방지를 위한 일시 중지<br>*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환경부) |    |

하동군 공고 제2017-1167호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 가. 상위법령 위임 없이 현행 조례에서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15일 이내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협의회에 서류 제출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나.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협의회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자율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주민협의회에 자율적 운영보장 저해 조항 삭제(안 제8조제4항)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6, FAX 880 -2109, e-mail mypebble01@korea.kr)  
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br>③ (생 략)<br>④ <u>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br/>                     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br/>                     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br/>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br/>                     출하여야 한다.</u> | 제8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br>③ (현행과 같음)<br><u>&lt;삭 제&gt;</u> |

하동군 공고 제 2017-1169호

##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 이유 :

-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제명과 인용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 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진흥’ 이 추가·확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다. 또한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 가.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조례명 개정
-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례 제명 정비 (안 제1조, 제2조, 제5조)
-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용도에 ‘옥외광고사업의 진흥’ 신설(안 제3조제1항)
- 라. 일본식 한자어 정비(안 제4조제1항)
  - ‘현금 구좌’ 를 ‘현금 계좌’ 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하동군 (참조 : 도시건축과, 전화 880-2136, FAX880-2109, e-mail [mypebble01@korea.kr](mailto:mypebble01@korea.kr) )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옥외광고정비기금” 을 “옥외광고발전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4항” 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5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제4조제1항 중 “현금구좌” 를 “현금계좌” 로 한다.

제5조 중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를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하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재원) <u>옥외광고정비기금</u>(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균으로 배분되는 수익금</li> <li>2.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17조에 따른 수수료</li> <li>3.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20조에 따른 과태료</li> <li>4.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li> </ol> | <p><u>하동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 제6조의2-----</p> <p>-----</p> <p>-----</p> <p>-----</p> <p>-----</p> <p>제2조(기금의 재원) <u>옥외광고발전기금</u>-----</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li> <li>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li> <li>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li> <li>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li> </ol> |

5. ~ 7. (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 5. (생략)

<신설>

6. (생략)

② (생략)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의 현금구좌로 관리한다.

②·③ (생략)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서 한다.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용도) ① -----  
-----  
-----.

1. ~ 5. (현행과 같음)

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  
--- 현금계좌-----.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심의) ---  
-----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하동군 공고 제2017-1207호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 이유 :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 배출가스를 줄이고 저공해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3. 주요 내용

- 가. 제1조(목적)
- 나. 제2조(정의)
- 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 라.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 마.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 바. 제6조(재정지원)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하동군(참조 : 환경보호과, 전화 880-2568, FAX 880-2569, myday8@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건 | 비고 |
|------------|-----|----|
|            |     |    |

## 경상남도 하동군 조례 제 호

# 하동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
2.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3. 하동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군수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 2. 그 밖에 이행 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제2항 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대기환경보전법 )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2.5.23.>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 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2.1.>
-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2.2.1., 2012.5.23., 2016.1.27.>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

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3.21., 2012.2.1., 2013.4.5., 2016.1.27.>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 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⑧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2.1., 2013.4.5.>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⑩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⑪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2013.4.5.>

⑫ 제11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5.23., 2013.4.5.>

⑬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